3 November 2026

ISSUE BRIEF

광장 국제통상연구원 | Global Commerce Institute

중국의 경제안보 법제와 기업의 대응 방향

중국의 경제안보 법제는 최근 시행규정 도입과 집행 강화 단계로 들어섰습니다.[1] 2014년 '총체적 국가안보관' 제시 이후 중국은 경제안보 법제를 체계적 · 포괄적으로 정비해 왔습니다. 2026년 5월 외국 제재를 거부하라는 취지의 금지명령이 발령되면서 한국 기업의 미국 계열사가 반외국제재조치의 대상이 된 사례도 있습니다. 또한 외국 규제를 이유로 중국과의 거래를 중단하거나 외국 정부 조사에 협조하여도 중국법상 위험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렇듯 중국의 경제안보 법제는 중국의 관할권을 넘어서까지 규제 가능하도록 확장 · 강화되고 있습니다. 이번 이슈브리프에서는 중국의 경제안보 법체계와 최근 입법 동향을 개관 및 평가하고, 기업에 대한 리스크와 대응방향을 정리합니다.

1. 중국 경제안보 법제와 최근 동향

1) 경제안보 입법 동향

중국의 경제안보 법제는 국가안보 기본법 정비(2014~2017년)와 수출통제법 · 반외국제재법 등 대외 대응 수단 마련(2020~2021년), 대외관계법과 「이중용도 물자 수출통제조례」를 통한 체계 보강(2023~2024년)을 거쳐, 최근에는 시행규정을 정비함과 동시에 집행이 강화되고 있다.[2] 이른바 '대외투쟁 법률 도구상자'를 채우는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3]

2025년 이후의 변화는 대체로 네 가지 흐름으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반외국제재법 실시규정」등 하위 규범이 마련되고 국무원 행정법규 3건이 2026년에 시행되면서 집행 절차와 근거가 정비되고 있다. 둘째, 외국 정부의 조사 · 제재에 협조한 제3국 기업의 계열사, 지정 기업과 거래하는 중국 내 주체, 중국산 원료가 들어간 해외 제조품까지 규율 대상이 넓어지고 있다. 셋째, 법원이 반외국제재법을 근거로 손해배상을 인정하는 등 사법 집행도 나타나고 있다. 넷째, 상당수 조치가 미 · 중 협의에 따라 유예 · 정지되는 탄력적 운용도 눈에 띈다.

2) 중국의 경제안보 법체계

중국의 법령은 명칭만으로 법적 위계를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제정 주체와 절차를

CONTACT



원장 최석영
T: 02.6386.6620
E: seokyoung.choi@leeko.com



고문 임채민
T: 02.6386.6630
E: chemin.rim@leeko.com



고문 이태호
T: 02.772.4396
E: taeho.lee@leeko.com



변호사 박정현
T: 02.6386.6649
E: junghyun.park@leeko.com



외국변호사 이해실
T: 02.6386.6349
E: haishi.li@leeko.com



연구위원 허난이
T: 02.6386.6451
E: nyhur@leeko.com



연구원 김사라
T: 02.6386.6560
E: sara.kim
@leeko.com



연구원 김나경
T: 02.6386.6563
E: nakyeong.kim
@leeko.com

함께 확인해야 한다. 중앙 차원의 법률 · 행정법규 · 부문규장을 중심으로 보면, 「입법법」상 효력은 헌법 아래 법률(전국인민대표대회 및 그 상무위원회), 행정법규(국무원), 부문규장(국무원 각 부 · 위원회 등) 순이다. 국무원령 · 상무부령의 '령(令)'은 공문형식의 일종으로 위와 별개의 법적 위계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그 구체적인 규정의 내용 등에 따라 행정법규나 부문규장에 속한다.4) 특히 중국의 경제안보 조치의 경우, 상위 법률이 기본 원칙과 권한의 근거를 정하더라도 구체적인 요건 · 절차와 집행 기준은 하위 규범에서 확인해야 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번 이슈브리프에서는 외국과의 거래 · 공급망 · 투자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법제 가운데 2025년 이후 새로 마련됐거나 집행이 본격화된 제도를 편의상 '통제형'과 '대항 · 차단형'으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다. (〈표 1〉, 반간첩법, 데이터안전법 등 데이터 · 정보 관리 관련 법제는 다루지 않았다.) 통제형은 중국 관할 내 물자 · 기술 · 자본의 이동을 허가와 심사로 관리하고, 대항 · 차단형은 외국 정부의 조치와 이를 집행 · 협조하는 행위를 겨냥한다. 다만, 수출통제가 특정 국가를 겨냥한 대항수단으로도 쓰이듯 이 구분은 상대적이다.

표 1 검토 대상 법제와 법적 위계[5]

유형	분야	법률	행정법규	부문규장 · 하위 문건
통제형	수출통제	수출통제법 (出口管制法, 2020)	이중용도물자 수출통제조례(两用物项出口管制条例, 2024)	품목별 통제 공고, 관리통제명단(管控名单), 기술수출 금지 · 제한 목록
	투자심사	외상투자법(外商投资法), 대외관계법(对外关系法), 대외무역법 (对外贸易法, 2026)	대외투자에 관한 국무원 규정 (国务院关于对外投资的规定, 2026)	외국인투자 안전심사방법(外商投资安全审查办法, 2021)
대항 · 차단형	공급망 안전	대외무역법	산업망 · 공급망 안전에 관한 국무원 규정 (国务院关于产业链供应链安全的规定, 2026)	공급망 안전조사 업무방법(产业链供应链安全调查工作办法, 2026)
	반외국제재	반외국제재법(反外国制裁法, 2021), 대외관계법	반외국제재법 실시규정(实施〈中华人民共和国反外国制裁法〉的规定, 2025)	개별 반제 결정
		대외무역법, 국가안전법 (中华人民共和国国家安全法, 2015)	–	불가신뢰실체명단 규정 (不可靠实体清单规定, 2020)
	외국의 역외관할 차단	국가안전법, 대외관계법, 반외국제재법	반외국부당역외관할 조례 (反外国不当域外管辖条例, 2026)	차단규정(阻断外国法律与措施不当域外适用办法, 2021), 금지명령

2. 통제형 법제: 수출통제와 투자 심사

1) 수출통제

2020년 12월 시행된 수출통제법 은 관리통제명단, 중국 밖 조직·개인에 대한 책임 추궁, 상응한 조치 근거를 두었고, 시행 행정법규인 「이중용도물자 수출통제조례」는 중국산 물자·기술이 들어간 해외 제조품에도 조례 준수를 요구할 근거를 마련했다. 이에 따라 갈륨·게르마늄(2023), 안티모니(2024), 텅스텐 등 5종과 희토류 7종(2025)이 차례로 허가 대상이 됐다. 2025년 10월 중국산 희토류가 가치 기준 0.1% 이상 포함된 해외 제조품, 희토류 기술, 리튬배터리 소재 등으로 확대된 통제(공고 6건)는 미·중 합의로 유예됐지만, 2025년 4월의 희토류 통제 등 기존 허가제는 그대로 적용된다. 기술 수출에서도 인공지능 관련 기술(2020), 배터리 양극재 제조기술과 리튬 추출 기술(2025) 등이 수출제한 목록 에 추가됐고, 2026년에는 일본, EU, 미국 실체의 관리통제명단 지정, 일본의 군사 용도에 대한 이중용도물자 수출 금지 등 국가와 기업을 특정한 조치가 늘었다. 상무부는 2026년 6월 전략광물 수출통제 위반 신고 제도를 정비해 제3국 경유 우회수출, 투자·연구 등을 통한 통제 기술 이전, 허가 없이 외국 정부의 검사나 방문 요청을 받아들이는 행위 등을 신고 대상으로 명시하고 실명 신고자 포상 근거 를 두었다.

2026년 10월에는 통제 대상이 첨단기술과 장비로 한층 넓어졌다. 상무부와 과학기술부는 10월 16일 인공지능(23개), 바이오 의약(5개), 태양광(12개) 분야 40개 기술(금지 14개, 제한 26개)을 「기술수출 금지·제한 목록」에 추가하는 개정안 을 공개하고(11월 15일까지 의견 수렴), 개정 시행 전까지 해당 기술의 소유권 해외 이전, 해외 사용 허락, 기술 소유자·실질 지배자의 외국 주체로의 변경 등을 수출 전에 등록하도록 하는 임시 조치를 공고일부터 시행했다. 이미 공개된 오픈소스·논문 기술은 제외되며, 제한 대상 대형모델의 해외 현지 배치는 기술 수출에 해당하지만 응용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API)·서비스형 소프트웨어(SaaS) 방식의 원격 제공은 해당하지 않는다. 10월 19일에는 터널굴착기(TBM)와 핵심 부품·재제조 기술 등을 이중용도물자로 통제하는 공고(11월 18일 시행) 등 4건을 발표했다. 제50호 는 중국과 분쟁 중인 민감 국가·지역으로의 수출에만 허가를 요구하고, 그 밖의 지역에는 정보 등록을 거쳐 수출 증명을 발급하되 민감 국가·지역으로의 재이전을 금지해 목적지에 따라 통제 강도를 달리했다.

2) 투자심사: 인바운드·아웃바운드

외국인투자 안보심사는 외상투자법 제35조와 함께 부문규장인 「외국인투자 안전심사방법」에 근거하며 이는 2021년부터 시행되었으나 2025년 이후 개정되지 않았다. 최근 변화는 아웃바운드 쪽이다. 「대외투자에 관한 국무원 규정」은 국가안보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수 있는 해외투자와 관련 해외자산·지분의 양도·처분을 안보심사 대상으로 삼고, 해외투자에 수반되는 기술 수출입과 수출통제 등은 관련 법령에 따르도록 해 해외투자를 통한 기술 이전도 관리하며, 투자 분야의 차별적 조치에 관여한 외국 주체를 반외국제재 명단에 올릴 근거도 두었다.

3. 대항·차단형 법제

1) 공급망 안전

2025년 개정된 대외무역법 은 입법 목적에 '국가 주권, 안보, 발전이익 수호'를 명시하고, 일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외국 개인·조직의 대중 수출입과 서비스무역을 금지·제한하며 그 회피를 돕는 행위를 금지하는 조항을 새로 두었다. 이어 2026년 4월 공포·시행된 「산업망·공급망 안전에 관한 국무원 규정」은 외국의 차별적 조치와 정상 거래를 중단한 외국 조직·개인에 대한 조사 및 반외국제재 조치를 규정했고, 상무부는 2026년 6월 그 조사 절차를 정한 「공급망 안전조사 업무방법」을 발표했다. 이 규정은 중국 법령을 위반해 중국 내에서 공급망 관련 조사 등 정보수집 활동을 하는 조직·개인에 대한 처리 조치도 두었다. 구체적 기준이 아직 제시되지 않은 만큼, 미국 위구르강제노동방지법(UFLPA) 대응 등 외국 규제에 따른 공급망 실사를 중국 내에서 수행하는 기업은 그 방식과 수행 주체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

또한 상무부는 2026년 10월 26일 대외무역법 등에 근거한 「중국 영업비밀 보호 특별규정」 의견수렴안을 공개했다. 중국 영업비밀을 침해해 국가 주권 · 안보 · 발전이익을 해친 외국 실체에 대해 수출입 · 투자 제한, 입국 제한, 벌금 등을 부과할 수 있게 하는 내용으로, 조사에 협조하지 않으면 확보한 사실만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11월 24일까지 의견수렴).

2) 반외국제재

반외국제재법과 실시규정(행정법규, 2025)은 외국의 차별적 조치에 관여한 개인 · 조직을 '반외국제재명단(反制清单)'에 올려 입국 금지, 자산 동결, 중국 내 주체와의 거래 금지 등을 부과하고, 외국의 차별적 조치를 집행하거나 그 집행에 협조해 중국 주체의 권익을 침해한 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지운다.[6] 2025년 10월 한화오션의 미국 소재 계열사 5곳이 미국 무역법 301조에 따른 조선 · 해운 조사에 '협조 · 지원'했다는 이유로 지정됐고(같은 해 11월부터 1년간 집행 정지), 2026년 8월에는 공급망 실사 · 인증 기관인 RBA(Responsible Business Alliance) 등 미국 기관 6곳이 미국의 신장 관련 제재에 협조했다는 이유로 지정됐다. 법원도 외국 제재를 이유로 운송을 거부한 선사에 제12조에 따른 배상 책임을 인정했고, 최고인민법원은 이를 전형사례로 발표했다.[7]

불가신뢰실체명단은 반외국제재법의 제정보다 앞선 2020년 대외무역법 및 국가안전법 등에 근거하여 상무부령으로 도입되었다. 반외국제재법 명단이 외국의 차별적 조치에 '관여'한 주체를 겨냥한다면, 불가신뢰실체명단은 정상적 시장거래 원칙을 어기고 중국 기업과의 거래를 중단하거나 차별적 조치를 취한 외국 실체의 시장 행위를 겨냥한다. 다만, 2025년 이후 지정 공고는 반외국제재법도 근거로 들고 있다. 2025년 10월 공고 제10호는 중국 내 조직 · 개인이 지정 기업과 거래하거나 데이터를 제공하는 것도 금지해 규율 범위를 제3자로 넓혔다. 미국 상무부의 거래제한 명단(Entity List)과 자주 비교되지만 근거와 조치 범위가 다르다.[8]

3) 외국의 역외관할 차단

국가안전법 등 관련 법률에 의거하여 제정된 「차단규정」과 「반외국부당역외관할조례」는 외국의 법과 조치가 중국에 미치는 효력을 막기 위한 법규다. 차단규정은 중국 주체와 제3국 간 정상 거래를 부당하게 금지 · 제한하는 외국 조치, 즉 2차 제재형 조치를 겨냥해 상무부가 승인 · 집행 · 준수 금지명령을 내리고, 이를 따르려면 면제를 받도록 한다. 제정 후 5년여 만인 2026년 5월 처음 발령된 금지명령은 이란 석유 거래를 이유로 중국 정유기업 5곳에 부과된 미국 제재를 대상으로 했다.[9] 한편, 반외국부당역외관할조례는 외국이 입법 · 집행 · 사법을 통해 중국 국민 · 조직에 부당하게 관할권을 행사하는 조치 전반을 대상으로, 그 집행 · 협조를 금지하고 '악의적 실체 명단(恶意实体清单)', 집행금지령(禁执令), 민사소송 등의 수단을 둔다. 불준수 의무에 더해 외국 주체를 직접 제재하는 수단까지 갖춘 것이다.[10] 시행 한 달여 만인 2026년 5월, 한국의 법무부에 해당하는 중국의 사법부(司法部)는 EU 집행위원회가 역외보조금규정(FSR)에 따른 Nuctech(同方威视) 조사에서 EU 법인 직원의 이메일 등 중국 내 서버에 저장된 정보를 광범위하게 요구한 것을 부당한 역외관할로 인정해 동 조례를 적용한 바 있다.[11] 즉, 동 조례가 외국의 부당한 역외관할에 대응하는 일반적인 틀이라면, 차단규정은 그중 제3국과의 거래 제한에 대응하는 특별규정으로 함께 적용되는 구조로 볼 수 있다.

4. 평가 및 특징

2025년 이후 중국의 경제안보 법제는 법률제정에 머물지 않고 시행규정과 행정법규의 정비를 통해 강화되거나 세분화되고, 규율 대상이 넓어지면서 외국 기업의 활동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 역외적용, 관리통제명단, 투자 안보심사 등 서방 주요국의 수단과 유사하게 설계하고 상응한 조치를 명문화한 것이 특징이다. 따라서 이들 법제는 미국의 제재에 맞서는 대항적 성격과 미국 통제 체계를 본뜬 대칭적 성격의 입법이 혼재하며, 조치의 상당수가 미 · 중 협의와 연계돼 있어 법 집행 수단이자 협상 수단으로 운용되고 있다. 중국의 조치는 공세적 이익과 방어적 목적이 공존한다. 「반외국부당역외관할조례」를 "국가 주권과 안보, 발전이익을 지키기 위한 방어적 대응"이라고 밝히면서도[12] 각종 통제 수단으로 자국의 이익을 극대화하고 상대국과 외국 기업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공세적 이익을 추구하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는 2022년 "중국의 차단 관련 법들이 발동되지 않거나 진화하지 않으리라고 보는 것은 순진하다"고 지적했는데,[13] 2025년 이후의 집행 사례는 이 전망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미국외교협회(CFR)는 2026년 9월 "중국이 핵심광물 수출허가 절차를 정보 수집, 국방 관련 신청 거부, 양보 확보 등에 구조적으로 활용해 왔다"고 평가했고,[14] 미 국무부와 미국무역대표부(USTR)도 중국의 법규 수단 활용 확대와 핵심광물 수출제한의 부담을 지적했다.[15]

5. 기업의 리스크와 대응 방향

기업들이 마주하는 리스크는 크게 네 가지다. 첫째, 입법과 집행이 함께 강화돼 명단 지정, 조사, 허가 거부가 실제로 이뤄지고 있다. 둘째, 역외적용 확대로 해외 계열사나 중국 밖 거래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셋째, 중국과 직접 거래하지 않더라도 핵심광물 수출허가 지연 등 글로벌 공급망을 통한 간접 영향이 있다. 넷째, 미 · 중 법제의 충돌이다. 한국 기업의 중국 법인이 미국산 품목이나 달러 결제 때문에 미국 제재 · 수출통제를 따라야 하는데 그 제재에 대한 중국의 금지명령도 적용 받는다면, 두 나라 법상 양립할 수 없는 의무를 지는 '법의 충돌'이 생긴다. 외국 조치가 법적으로 직접 구속하지 않더라도 2차 제재 위험 때문에 따를 압력을 받는 '리스크 상충'도 있다. 거래를 끊으면 중국의 공급망 조사나 민사소송 위험이, 거래를 지속하면 미국의 2차 제재 위험이 남는다.

대응 방향은 대체로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법제 충돌), 미 · 중 법제가 충돌하거나 충돌할 수 있는 거래는 사안별로 양국 법을 함께 검토해야 한다. 중국 상무부의 면제나 외국 당국의 허가 같은 공식 절차가 있지만 결과를 예측하기 어렵고, 승인을 받더라도 모든 위험이 해소되지는 않는다. 거래 중단이나 외국 정부에 대한 자료 제출 같은 민감한 결정에 앞서 미국과 중국 양쪽 법률 전문가의 검토와 자문을 거치고, 그 결정이 법적 의무에 따른 것인지 경영상 판단인지와 검토 경과를 문서로 남겨 둘 필요가 있다.

둘째(집행 강화와 역외적용), 수출통제, 투자심사, 반외국제재, 차단규정을 하나의 컴플라이언스 체계로 관리해야 한다. 편의상 통제형과 대항 · 차단형으로 나누었지만, 수출통제가 대항수단으로 쓰이고 하나의 거래 중단이 공급망 안전조사, 불가신뢰실체 명단, 반외국제재법상 책임으로 동시에 이어질 수 있을 만큼 이들 제도는 서로 연결돼 있다. 허가 · 불허 기록과 거래 중단 사유를 한곳에 모으고, 제재나 허가 변경에 대비한 계약 조항과 대체 조달선을 마련해야 한다.

셋째(집행의 탄력적 운용), 미 · 중 통상 · 투자 협상의 흐름을 거시적으로 모니터링해야 한다. 중국의 상당수 조치가 협상 결과에 따라 발동·유예·연장되기 때문이다. 쿠알라룸푸르 공동 합의는 2026년 9월 협의에서 2027년 1월 10일까지 연장됐지만 연장 폭은 2개월에 그친다.[16] 희토류 통제 확대 공고나 한화오션 계열사에 대한 반외국제재 조치 등 개별 유예 조치는 당초 2026년 11월 10일(갈륨 · 게르마늄 · 안티모니 등의 대미 수출 금지 유예는 11월 27일) 종료 예정이었고, 작성 시점까지 이를 연장하는 개별 공고는 확인되지 않았다.[17] 협상 동향을 상시 추적하면서 개별 거래에는 해당 조치의 최신 공고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아래의 〈표 2〉에서는 기업 행위에 있어 중국의 경제안보 관련 법제를 바탕으로 점검해볼 만한 포인트를 정리하였다. (주요 쟁점을 단순화한 예시이며, 실제 판단은 거래 구조와 사실관계, 미국 등 외국 규제의 적용 여부를 함께 검토해야 한다. 자료: 각 법령 · 공고.)

표 2 행위별 점검 포인트

기업의 행위	관련 중국 법제	점검 포인트	함께 볼 외국 규제
외국 규제를 이유로 거래 중단 및 공급 거절	공급망 안전조사, 불가신뢰실체명단, 반외국제재법 제12조	정상적 시장거래 원칙 위반 여부가 쟁점. 허가 불허 등 법적 사유인지, 일괄 중단인지 기록	미국 제재(OFAC)·수출통제(EAR) 적용 여부와 허가 가능성
외국 정부 조사에 협조 및 자료 제출	반외국제재법(협조·지원), 반외국 부당역외관할 조례	법적 의무와 자발적 협조 구분, 제공 범위 최소화와 근거 문서화	조사 근거 법령상 제출 의무의 범위(예: 미국 무역법 301조 조사)
공급망 실사·인증 기관 이용	반외국제재법(지정 기관과의 거래 금지), 공급망 안전 규정 제13조	실사·인증 기관의 명단 등재 여부, 중국 내 실사 방식과 대체 수단	위구르강제노동방지법(UFLPA) 등 실사 요구

중국산 희토류·핵심광물 조달	수출통제법, 이중용도물자 수출통제조례	최종용도 약정, 제3국 경유 거래 여부, 유예 종료 후 해외 생산품의 역외적용 여부	주요국의 핵심광물 조달·원산지 요건
중국 기업과의 기술 라이선스, 공동개발, 중국 법인 지분·지배구조 변경	대외무역법, 기술수출 금지·제한 목록	임시 사전등록 대상 여부, 목록 확정 시 금지·허가 대상 해당 여부	미국 수출관리규정(EAR)상 기술 이전 통제
중국계 해외자산 인수, 글로벌 M&A	대외투자 규정	매도인 측 중국 안보심사 장기화를 거래 일정·선행조건에 반영	미국 CFIUS 외투심사제도 및 해외투자규제 COINS Act 등

1) Stewart Paterson, "Is China's economic statecraft sustainable?", Hinrich Foundation, 2026.10.

2) 주요 입법 연혁(연도는 공포 기준, 단계는 입법 시기와 주된 내용에 따른 편의상 구분). 1단계(2014~2017, 국가안보 기본법 정비): 반간첩법(2014), 국가안전법·반테러법(2015), 사이버안전법(2016), 국가정보법(2017). 2단계(2020~2021, 대외 대응 수단 마련): 수출통제법, 불가신뢰실체명단규정, 외국인투자안전심사방법, 홍콩국가안전법(2020), 차단규정, 반외국제재법, 데이터안전법(2021). 3단계(2023~2024, 체계 보강): 개정 반간첩법, 대외관계법(2023), 이중용도물자 수출통제조례, 개정 광물자원법(2024). 4단계(2025~, 시행규정 정비·집행): 반외국제재법 실시규정, 개정 대외무역법(2025), 산업망·공급망 안전 규정, 반외국 부당역외관할 조례, 대외투자 규정(2026). 자료: 각 법령 원문.

3) 中国政府网, "新修订的对外贸易法自2026年3月1日起施行", 2025.12.27., https://www.gov.cn/yaowen/liebiao/202512/content_7052903.htm; 《中国人大》 2025年第20期, "以法护航推进对外贸易强国建设", http://www.npc.gov.cn/npc//c2/c30834/202511/t20251127_449716.html

4) 「中华人民共和国立法法」(2023年修正) 第11·12·72·91·99조, https://fgk.chinatax.gov.cn/zcfgk/c100009/c5211769/content.html. 국가주권·대외무역 기본제도 등은 법률 사항이나(제11조) 수권이 있으면 국무원이 행정법규를 먼저 제정할 수 있고(제12조), 부문규장은 법률·행정법규 등의 근거 없이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늘릴 수 없다(제91조). 「行政法规制定程序条例」 제5조상 부문규장에는 "条例" 명칭을 쓸 수 없다. 지침·업무방법·공고 등은 통상 규범성 문건(规范性文件)이다.

5) 유형 구분은 편의상 나눈 것으로, 같은 조치가 두 유형에 모두 해당할 수 있다(예: 수출통제법 제48조의 대등조치). 대외무역법과 공급망 안전 규정은 통제 권한도 두고 있으나 한국 기업에 대한 영향이 주로 대항조치에서 비롯되므로 대항·차단형으로 분류했다. 자료: 각 법령 원문.

6) 반외국제재 명단은 자산 동결·거래 금지를 부과한다는 점에서 OFAC의 SDN 지정과 같은 1차 제재에 가깝다. 미국 무역법 301조에 상응하는 수단은 대외무역법상 대등조치나 공급망 안전 규정 제14조이며, 미국 2차 제재에 대한 대응 수단은 차단규정과 반외국제재법 제12조다.

7) 最高人民法院, "最高人民法院发布2025年全国海事审判典型案例", 2026.6.24., https://www.court.gov.cn/zixun/xiangqing/503641.html

8) 「不可靠实体清单规定」 제2조(정상 거래 중단·차별적 조치 등), 제10조(수출입·투자 제한, 입국·체류 제한, 벌금 등). 미국 Entity List(15 C.F.R. Part 744, Supp. No. 4)는 EAR 대상 품목 이전에 허가를 요구하는 수출통제 수단으로, 중국과의 거래 중단 자체를 지정 사유로 삼고 투자·입국 제한까지 포괄하는 불가신뢰실체명단과 차이가 있다. https://www.ecfr.gov/current/title-15/subtitle-B/chapter-VII/subchapter-C/part-744

9) 商务部公告2026年第21号, 2026.5.2., https://www.mofcom.gov.cn/zwgk/zcfb/art/2026/art_0ff88c45f1974962a539775085014888.html

10) 세 명단은 지정 사유와 제재 범위에서 구분된다. ① 반외국제재 명단은 외국의 차별적 제한조치 관여자를 대상으로 입국 제한·재산 동결·거래 금지 등을 부과한다. ② 불가신뢰실체명단은 대중 거래 중단·차별 등 시장거래 원칙을 위반한 외국 실체에 수출입·투자·입국 제한과 벌금 등을 부과한다. ③ 악의적 실체 명단은 부당한 역외관할 조치 관여자를 대상으로 재산 동결·거래 금지·수출입 제한뿐 아니라 데이터·개인정보 제공 금지 등도 부과한다.

11) 司法部, "关于欧盟外国补贴调查相关做法构成不当域外管辖的公告", 2026.5.15., https://www.news.cn/20260515/24db5d4cd6784bddbb42ee28ca41dddb/c.html

12) 司法部负责人就《中华人民共和国反外国不当域外管辖条例》答记者问, 2026.4.14., https://www.gov.cn/zhengce/202604/content_7065472.htm; 新华社 보도(商务部 금지명령), 2026.5.2., https://www.news.cn/fortune/20260502/07cfb88cf894495b928d681fba2c28f9/c.html

13) Jeannette L. Chu, "The New Arms Race: Sanctions, Export Control Policy, and China", CSIS, 2022.3.25., https://www.csis.org/analysis/new-arms-race-sanctions-export-control-policy-and-china

14) Joris Teer, Dismantling China's Supply-Chain Weapon, Council on Foreign Relations, 2026.9., https://www.cfr.org/reports/dismantling-chinas-supply-chain-weapon

15) U.S. Department of State, 2026 China Investment Climate Statement, 2026.8., https://www.state.gov/wp-content/uploads/2026/08/701264_2026-China-Investment-Climate-Statement.pdf; USTR, 2026 National Trade Estimate Report on Foreign Trade Barriers, pp. 114–115.

16) 商务部, "商务部美大司负责人解读第八轮中美经贸磋商成果", 2026.9.28., https://www.mofcom.gov.cn/syxwfb/art/2026/art_d9ea01824fc44fd8a29f7dc3f8ca9c72.html

17) 商务部·海关总署公告2025年第70号(2026.11.10까지 유예), https://www.mofcom.gov.cn/zwgk/zcfb/art/2025/art_b1ec77dd3f0d4762952904df7cdaadec.html; 商务部公告2025年第72号(2024年第46号公告 第2款의 대미 수출 금지 2026.11.27까지 유예), 2025.11.9., https://www.tid.gov.hk/en/tradecircular/files/2025/ci9782025a.pdf

지난 이슈브리프 더보기

- 한국의 CPTPP 가입 추진(I): 배경, 기회와 도전요인들 (2026. 10. 2.)
- EU 배터리 규정 최근 동향과 대응 과제: 배터리 여권과 기업 리스크 점검 (2026. 9. 15.)
- EU 산업가속화법(IAA) 입법 동향과 한국 산업별 영향 검토 (2026. 8. 31.)
- Trump 관세의 실체: 미국 대통령의 관세 부과 권한과 한계 (2026. 7. 27.)
- 주요국의 외국인투자심사제도 강화 동향: 특징, 리스크 및 대응방향 (2026. 7. 22.)
- AI · 사이버 전장의 시대, 한미 방산협력의 새 길 (2026. 7. 16.)
- 국제통상질서 재편: 「턴베리 체제」와 통상 리스크 - 미국의 양자 무역합의 확산과 도전 (2026. 6. 23.)
- 미 · 중 정상회담 결과: '전략적 안정' 합의와 통상 · 투자 위원회 설치 (2026. 5. 27.)
- 2026 베트남 대전환: 신지도부 경제전략과 우리 기업의 대응 방향 (2026. 5. 14.)
- 2026년 미국의 국별무역장벽(NTE) 보고서 (2026. 4. 8.)
- 미국 무역법 301조 조사 개시와 그 함의 (2026. 4. 3.)
- EU 산업가속화법안의 주요 내용과 국내 산업계 시사점 (2026. 3. 18.)
- 미 국제무역법원(CIT), IEEPA 관세 전면적 환급 명령 (속보) (2026. 3. 11.)
- 상호관세 등에 대한 미국 연방대법원 판결 (속보) (2026. 2. 23.)
- 미국의 양자 무역 · 투자 합의 분석과 전망 (2026. 2. 11.)
- 한 · 미간 조선 · 해운 협력과 도전과제 (2026. 1. 14.)

『광장 국제통상연구원』(원장: 최석영)은 글로벌 경제안보의 급부상과 무역 체제의 변화 등 새로운 국제통상 질서에 대응하기 위해 「법무법인(유) 광장」이 설립한 연구기관입니다. 기업 경영 및 정부 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통상 · 경제안보 이슈를 면밀히 분석하여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한편, 국내외 전문가들의 지식과 경험을 소통하고 공유하는 열린 토론의 장으로 발전하고자 합니다.

게재된 글의 저작권은 『광장 국제통상연구원』에 있으며, 무단 복제 및 도용을 금합니다.

이 뉴스레터는 일반적인 정보 제공만을 목적으로 발행된 것으로서, 법무법인(유) 광장의 공식적인 견해나 법률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법무법인(유) 광장에서 발송하는 뉴스레터를 원하지 않으시면 **[수신거부]**를 클릭해 주십시오.

뉴스레터 더 보기

Lee & Ko 법무법인(유) 광장

서울 | 서초, 서울 | 판교 | 북경 | 호치민시티 | 하노이 | 자카르타

02.772.4000 | mail@leeko.com | www.leeko.com